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38호

2026. 8. 20.(목)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고 시

- 제2026-6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3
- 제2026-66호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4

공 고

- 제2026-140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제2026-141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7
- 제2026-142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31

인 사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6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6. 8. 2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상점가 규모		지정일자
			면적	점포수	
수락산역6번출구 골목형상점가	김*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689 일대	2,058m ²	68개	2026.8.12.

☎ 문의처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02-2116-348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 66호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39번지 일대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39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166,845.1㎡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4, 312호(상계동, 보람상가)

라. 토지등소유자 수 : 3,364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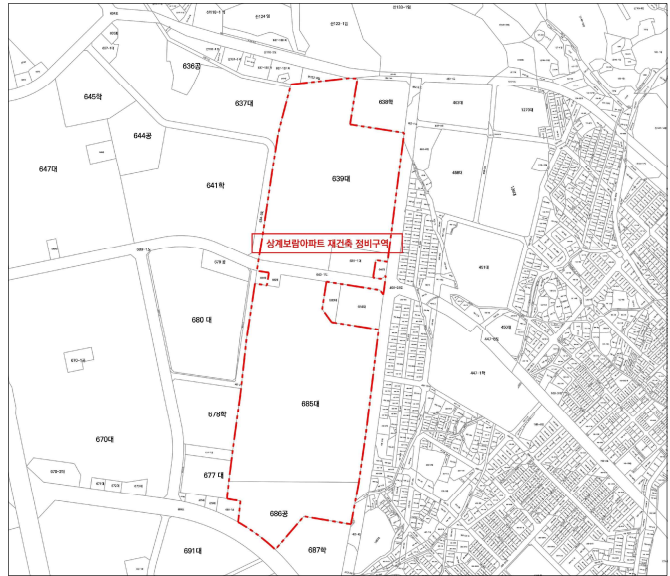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1	위 원 장	이근환	210동
2	감 사	박미숙	106동
3	감 사	조남준	207동
4	추진위원	박용수	101동
5	추진위원	이미영	101동
6	추진위원	김동원	101동
7	추진위원	이경태	102동
8	추진위원	김광영	102동
9	추진위원	한유리	103동
10	추진위원	이정원	103동
11	추진위원	황존성	104동
12	추진위원	유규섭	104동
13	추진위원	이지웅	104동
14	추진위원	이경미	105동
15	추진위원	정윤환	105동
16	추진위원	안혁상	105동
17	추진위원	심명자	105동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18	추진위원	곽해정	105동
19	추진위원	김영동	105동
20	추진위원	이경아	105동
21	추진위원	조현	106동
22	추진위원	김요현	106동
23	추진위원	이명희	106동
24	추진위원	채희석	106동
25	추진위원	민경건	107동
26	추진위원	심은정	107동
27	추진위원	우정구	107동
28	추진위원	김효순	107동
29	추진위원	노정자	107동
30	추진위원	강길원	107동
31	추진위원	김보람	107동
32	추진위원	이정구	107동
33	추진위원	이수오	108동
34	추진위원	이금자	108동
35	추진위원	이미송	108동
36	추진위원	조영한	108동
37	추진위원	이기원	108동
38	추진위원	임미향	109동
39	추진위원	권기용	109동
40	추진위원	안주연	109동
41	추진위원	박경미	109동
42	추진위원	차후영	110동
43	추진위원	조창호	110동
44	추진위원	이미자	110동
45	추진위원	남혜령	111동
46	추진위원	이수현	111동
47	추진위원	김은영	111동
48	추진위원	유근미	111동
49	추진위원	정해선	111동
50	추진위원	손태성	201동
51	추진위원	김종학	201동
52	추진위원	남득모	201동
53	추진위원	조충제	201동
54	추진위원	황동연	201동
55	추진위원	전문구	201동
56	추진위원	허지원	202동
57	추진위원	홍석진	202동
58	추진위원	김평수	202동
59	추진위원	신인숙	202동
60	추진위원	박승운	202동
61	추진위원	오진경	202동
62	추진위원	박치영	203동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63	추진위원	최방자	203동
64	추진위원	변상남	203동
65	추진위원	이지영	203동
66	추진위원	김양호	203동
67	추진위원	박성연	204동
68	추진위원	김의순	204동
69	추진위원	서영준	204동
70	추진위원	조일순	204동
71	추진위원	조웅래	204동
72	추진위원	나병갑	204동
73	추진위원	고선옥	204동
74	추진위원	이승창	204동
75	추진위원	신중래	204동
76	추진위원	박미영	205동
77	추진위원	김봉규	205동
78	추진위원	김영수	205동
79	추진위원	송광식	205동
80	추진위원	홍현중	205동
81	추진위원	김상우	206동
82	추진위원	원서정	206동
83	추진위원	오수진	206동
84	추진위원	전병윤	206동
85	추진위원	곽순애	206동
86	추진위원	심재영	206동
87	추진위원	최익진	206동
88	추진위원	박성철	206동
89	추진위원	김광희	206동
90	추진위원	신승길	206동
91	추진위원	강양훈	206동
92	추진위원	이순심	207동
93	추진위원	남궁진	207동
94	추진위원	박승순	208동
95	추진위원	김성동	208동
96	추진위원	김대혁	208동
97	추진위원	장현진	208동
98	추진위원	이충선	208동
99	추진위원	김영근	209동
100	추진위원	서경숙	209동
101	추진위원	김장희	209동
102	추진위원	정종민	209동
103	추진위원	김동우	209동
104	추진위원	김광미	209동
105	추진위원	임근호	210동
106	추진위원	유수연	210동
107	추진위원	이아라	210동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 : 2026년 8월 19일

3. 위치도 및 정비구역 결정(안)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40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열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5호)
- 나.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안 제6조제6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녹색환경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5(상계동 709), 우: 01689, 전화: 2116-3206, FAX: 2116-4611, 이메일: min3@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열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5호)
- 나.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안 제6조제6호)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u>추진하여야</u>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 <u>추진해야</u> ---- ----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u>유지 관리하여야</u> 한다.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 ----- ----- ----- ---- <u>범위</u>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u>유지 관리해야</u>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 ----- -----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신 설>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41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5조)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고 : 청년정책과,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 2116-7112, FAX : 2116-4771, 이메일 : dapone@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산·학·연”을 “산학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 할”을 “해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6인 이상 9인”을 “6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 창업기업 []인증
 []재인증 신청서
 []변경인증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성별 :)		형태 [] 법인 [] 개인
	주소 (전화번호:)		

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청년 창업기업 인증 신청 → 접수 → 서면조사·현장조사 → 검토·확인 → 청년 창업기업 인증서 발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 <u>청년창업지원센터</u> ”(이하“ <u>창업지원센터</u> ”라 한다)란 구가 청년들의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 8.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청년창업지원센터</u> ”(이하“ <u>창업지원센터</u> ”----- ----- -----.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년 창업기업의 육성 및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u>노력하여야</u>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u>노력해야</u> ----.
제4조(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청년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u>산·학·연</u>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지원 5. ~ 8. (생략)	제4조(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산학연</u> ----- ----- -- 5. ~ 8. (현행과 같음)

제7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관리규정)

창업지원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센터내 창업공간 입주자 선정 및 이용수칙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① -

범위-----.

② -----

----- 이행해야 -----
-----.

③ -----
----- 사용
해서는 안 -----.

④ -----

않은 -----

-----.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관리규정)

시행해야 -----.

제9조(창업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공간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1조(입주 대상 및 기간 등) ①

(생략)

②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4년으로 한다. 단, 이 범위 내에서 창업공간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갱신주기와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창업공간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9조(창업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① -----

----- 해지할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반환해야 -----.

제10조(창업공간 입주자 지원 등)

① ----- 범위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주 대상 및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창업공간 사용료 등) ① -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청년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생략)

3. 청년 창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전문 기관 · 시설 · 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4. ~ 6. (생략)

④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력해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6명 이상 9명 -----

-----.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4. ~ 6. (현행과 같음)

④ -----

해야 ----. -----

-----.

⑤·⑥ (생 략)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
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⑧ (생 략)

제15조(인증 절차) ① 청년 창업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년
창업기업으로 인증한다.

제1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
청장은 청년 창업기업으로 인증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년 창업기
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인증서를 발급
받은 청년 창업기업은 대표나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위원에게 --

-----.

----- 예외
로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증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② -----

----- 따라 -----
-----.

제1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

----- 발급해야 -----.

② -----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
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
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야 -----.

관계법령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의 건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 건 제 출 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42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나.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편성(안 제27조)

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안 제2조의2, 제2조의 3)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안전도시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Tel : 02-2116-3121, Fax : 02-2116-4618, E-mail : jae1000lee@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가족 지원 및 소통 기능을 명시하고, 전담팀 및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대상아님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대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비”라 함은”을 ““대비”란”으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를 “상황하에서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복구”라 함은”을 ““복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생활”을 “한다) 생활”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의”를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 구성한다”를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관계 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개최한”을 “개최할”로,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실무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수행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및 그 밖에 재난에 관한 주요사항”을 “등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한다.

5.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하여야”를 “설치·운영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총괄”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상황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중 “파견하여야”를 “파견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고자 할”을 “설치·운영하려는”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배치하여야”를 “재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4”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을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취득한”을 “취득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0조 중 “작성·운용하여야”를 “작성·운용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을 “취득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운영함에 있어”를 “구축·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재난발생시”를 “재난발생 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각각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55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6조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제57조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u>이란</u> ----- ----- ----- ----- -----.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란 ----- ----- <u>상황하에서 수행해야</u> ----- ----- ----- -----.
4.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 <u>이란</u> ----- ----- ----- ----- ----- -----.
5.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5. “복구”란 ----- -----

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
선대책 등을 포함한 모든 활
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
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
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
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
관을 말한다.

7.·8. (생략)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
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
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
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
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노
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
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

6. -----이란 ---

-----.

7.·8. (현행과 같음)

제3조(구의 책무) ① -----

----- 마련해야 -----
----- 한다)
생활-----
----- 노력해야 -----.

② -----

----- 확보해야
-----.

③ -----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구민은 지역사회회의 구성원으

----- 협력해야 -----.

④ -----

----- 응해야 -----.

제5조(구민의 책무) ① -----

----- 노력해야 -----.

② -----

----- 취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③ -----

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3. ~ 5. (생략)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노력해야
-----.

④ -----
----- 협력해
야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
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
진에 관한 사항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
다. <후단 신설>

1. ~ 7. (생 략)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 장
은 조직 내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④ (생 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후단 신설>

-----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

----- 통보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3. (생략)

③ ~ ⑥ (생략)

⑦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통지해야 -----.

-----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관

계기관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개최

할 ----- 작성

·비치해야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 범위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협조해야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

----- 통보해야 ----
--.

② -----

----- 점검
해야 ----.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

-----.

② (생 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제17조(구성·운영) ① (생 략)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 3. (생 략)

4.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

----- 않도록 -----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③ (생략)

<신설>

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제19조(대책본부 회의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 3. (생략)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기준, 지원결정 및 그 밖에 재난에 관한 주요사항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책본부 회의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등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②·③ (생 략)

제20조(회의 소집) ①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
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
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
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
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
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
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여야 하
나, 필요에 따라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4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소집) ① -----

-- 통보해야 ----. -----
----- 예
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개최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

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 ① (생 략)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대책본부

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해야 -----
--.

③ -----
----- 근무해야

-----.

-----.

제25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
행해야 -----.

③ -----

-----.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27조(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들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 통보해야 -----.

제26조(설치·운영) ① -----
 --- 재난 -----

 -----.

② -----

 --- 설치·운영해야 -----.

1. ~ 8.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성 및 임무) ① -----

 ----- 운영해야 -----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 략)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을 위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임무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상황총괄-----
-----.

④ -----

-- 규칙으로 -----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

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0조(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
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
여야 하고,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
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
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
부의 위치 등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31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의로의 전환할

과견

해야.

제30조(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 설치·운영하려는 -----

----- 설치해

야 -----

----- 통보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
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구성·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
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청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
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재배치해야 ----.

② -----

--- 보고해야 -----.

제34조(구성·운영) ① -----

----- 특
정 성별-----
----- 않도록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없

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생략)

제35조(재난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으면 -----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재난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3항-----

----- 제출해야
-----.

② -----

----- 위원회-----
-----.

③ -----

----- 통보해야 -----.

④ ----- 법 제25조의4-----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
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
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
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제
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7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 취해야 -----.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

----- 실시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지해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

-----.

1. -----

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 예방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38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

----- 신고해야 ----.

② -----

----- 조치해야 ----.

제39조(위험정보 통보)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취득할 -----
----- 통보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41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

제4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

----- 작성·운용해야 ---

---.

제41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

-----.

② -----

--- 협력해야 -----.

제4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

----- 구축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여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3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발생이 예상될 경
우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
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
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
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
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
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45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청장
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및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
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비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

----- 보고해
야 ----.

② -----

----- 해야 -----
--.

제45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취득할 -----

----- 통보해야 -----.

1. ~ 4. (생 략)

③ 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④ (생 략)

제46조(응급대응조치) ① 구청장
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
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
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재
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상
황을 조사하고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야
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48조(재난지역 적용 범위) ①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 구축·운영하는
경우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응급대응조치) ① -----

----- 재난발생 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

----- 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응해
야 -----.

제48조(재난지역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0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 실시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청장이 제51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기준 규정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② -----

----- 법 제60조제4항-----

-----.

제50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 실시 등) ① -----

신고해야 ----.

② -----

신고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환수) 구청장은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9조 및 제5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7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 실시
해야 ----.

제55조(중복지원 금지) -----

----- 않는다.

제56조(환수) -----

----- 환수해야 -----.

제57조(재원의 확보) -----

----- 확보해야 -----.

제59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

----- 추진해야 --

한다.

② (생 략)

제6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구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6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

----- 노력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

----- 노력해야 -----.

제62조(안전교육) ① -----

----- 실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수당 등) -----

----- 범위 -----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
준」을 준용한다.

----- . <후
단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 및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도시과 이재천
연 락 처	02-2116-3121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2026. 1. 21. 공포, 2026. 7. 22. 시행)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편제, 조직 및 주요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및 주요 임무 등 신설(안 별표 1-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신설(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통합지원본부의 편제 및 임무 등)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 임무 등은 별표 1-2와 같다.

제2조의3(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조례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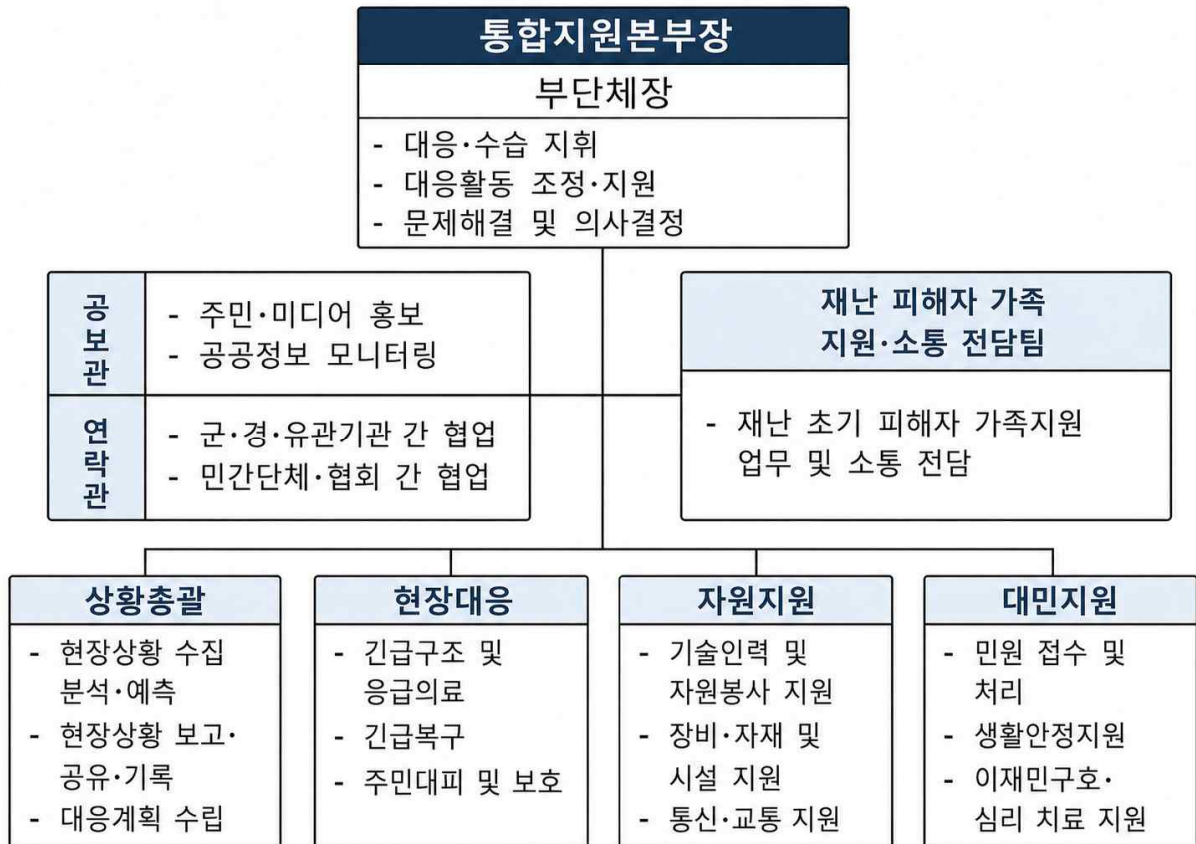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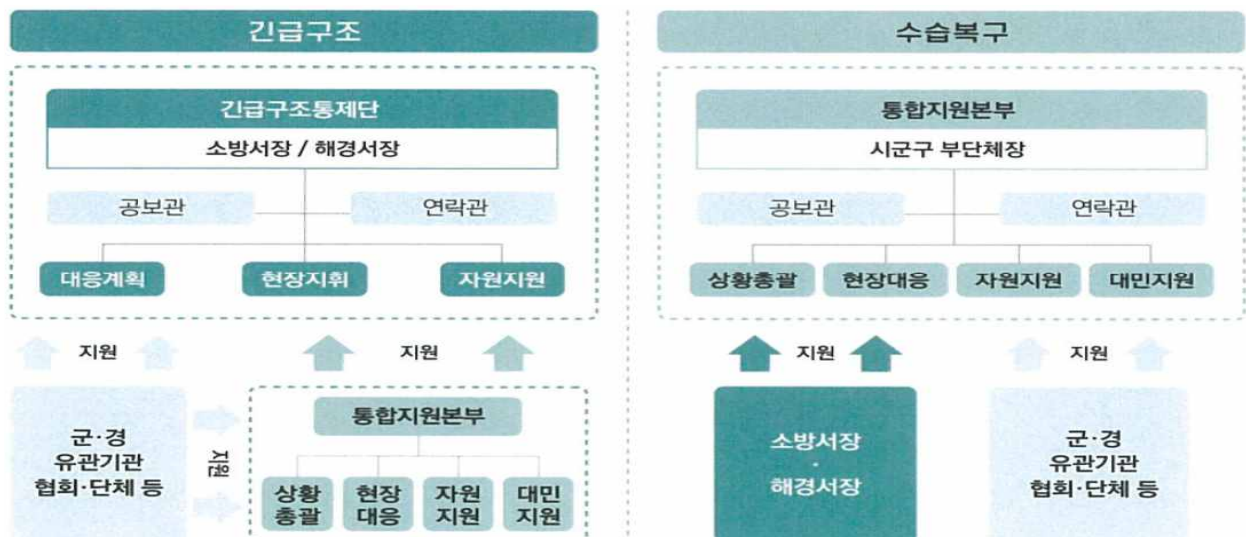
[별표 1-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등 (제2조의2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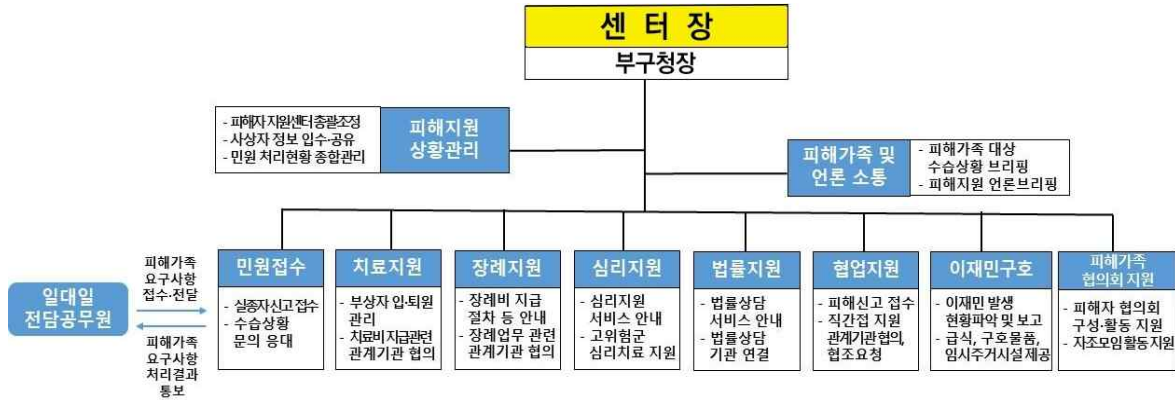
[별표 4]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제2조의3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 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직도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조직도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참고**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2026. 1. 21. 공포, 2026. 7. 22. 시행)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인 사

노 원 구

(발령 제234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신 주 호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안전교통건설국 토 목 과	지 방시 설 관 리 서 기 보

2026. 8. 20.字.

노 원 구

(발령 제235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이 수 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의 규정에 따라 시 간 선 택 제 근 무 를 명 함 (기간 : 2026.8.24.~2026.12.31., 1주당 35시간 근무)	기 획 재 정 국 징 수 과	지 방 세 무 주 사 보

2026. 8. 24.字.